접수번호	FITI-M291-26-	검사자명	안 진 현 (서명)

검사항목		기준 및 결과 (물이용놀이기구의 안전요건)	판정
		S1 : □ 조합놀이대형 □ 버킷형 □ 기타단품형 (특징 :) S2 : □ 조합놀이대형 □ 버킷형 □ 기타단품형 (특징 :) S3 : □ 조합놀이대형 □ 버킷형 □ 기타단품형 (특징 :) S4 : □ 조합놀이대형 □ 버킷형 □ 기타단품형 (특징 :)	
물이용놀이기구의안전요	설치장소	물이용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에 관한 안전수칙 및 최대 수심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□ 안전수칙 및 최대 수심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이 설치됨 □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, 안전수칙 및 최대 수심 등이 포함되지 않음	□ 합격 □ 불합격 □ 해당없음
	물순환시설	전기동력을 이용하는 물순환시설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용 놀이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. □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물순환시설이 물이용놀이구역 밖에 설치됨 □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물순환시설이 물이용놀이구역 내부에 설치됨	□ 합격 □ 불합격 □ 해당없음
	매달려 있는 구조물	매달려 있는 구조물(버킷 등)의 이탈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체인,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, 쉽게 분리할 수 없어야 한다. 단, 사용자의 조작으로 구동하는 것, 자유공간 내에 위치한 것, 소량의 물로 작동되는 것 등은 이중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. 구동 구조물(버킷 등)은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 버킷이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S1 :: □ 해당없음(대형버켓 미설치 기구)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음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S2 :: □ 해당없음(대형버켓 미설치 기구)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음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S3 :: □ 해당없음(대형버켓 미설치 기구)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음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S4 :: □ 해당없음(대형버켓 미설치 기구)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음 □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이중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음	□ 합격 □ 불합격 □ 해당없음
	배수장치	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 배수되어야하고 배수구(오버플로우) 그물망의 메쉬(mesh)는 20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(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사방(四方)이 막힌 조합놀이대형 물이용 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) □ 지정수위 이상의 물이 오버플로우 등으로 자연배수됨 □ 지정수위 이상의 물이 오버플로우 등으로 자연배수되지 않음 □ 배수구 및 오버플로우의 그물망의 메쉬가 20 mm를 초과하지 않음 □ 배수구 및 오버플로우의 그물망의 메쉬가 20 mm를 초과함 □ 오버플로우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설치됨 □ 오버플로우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지 않음(접근가능함)	□ 합격 □ 불합격 □ 해당없음
		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의 최대수심은 300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. 또한 배수할 때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배수하였을 시 바닥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. 가장 깊은 곳의 수심 : mm	□ 합격 □ 불합격 □ 해당없음

(/)